



IMO News Brief

III 10



제10차 협약이행 전문위원회(이하 “III 10”)가 2024년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하이브리드 회의로 개최됨. 동 News Flash는 III 10의 주요 논의 결과를 브리핑함.

1. PSC 활동과 절차의 조화로운 시행 (의제 5)

(PSC 활동, 사례 및 통계 분석)

문서 FSI 20/WP.5의 부록 3에 기재된 양식을 사용하여 모든 PSC 체제에게 연례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전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함.

(PSC 지침 및 절차)

(해상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통제 및 준수 조치에 대한 지침) 해상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통제 및 준수 조치에 대한 지침(MSC.159(78))을 기존 PSC 절차서의 부속서 양식에 맞춰 변경하여 PSC 절차서의 부속서로 추가하기로 결정함.

(출항정지와 관련된 일관된 지침 확보) PSC 절차서 및 부속서 사이의 일관된 지침을 확보하기 위하여, PSC 절차서 부속서 2, 8, 9, 11 및 18에 각각 포함되어 있는 출항정지성 결함에 대한 내용들을 부속서 2(Guidelines for the detention of ships)로 이동함. 그리고 “일일 휴식 시간 기록이 본선에 없는 경우”를 출항정지성 결함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함.

(위험성 평가) IGF Code 관련 위험성 평가 보고서를 PSCO가 PSC 수검 시(또는 수검 전) 검토하도록 하는 수정안은 PSC 절차서에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함.

2. PSC 표준 교육훈련 과정 (의제 6)

(PSC 표준 교육훈련 과정 개정 초안)

MLC 관련 사항을 PSC 표준 교육훈련 과정에 포함시키기로 함. PSC 표준 교육훈련 과정의 중요성과 대다수 대표단이 품질 우선 원칙을 지지함에 따라, PSC 표준 교육훈련 과정의 개발, 검토 및 검증을 시행하고 수정된 PSC 표준 교육훈련 과정을 최적화하고 개선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함에 동의하였고, 이를 위한 로드맵도 개발하여 제시함

(PSC 표준 교육훈련 과정의 주요 내용)

- Part A. Course framework
- Part B. General outline
 1. Get an overview of PSC and PSC activities worldwide
 2. Explain and implement the IMO Convention
 3. Carry out insp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SC Procedures
 4. Carry out inspection on the ship's documentations
 5. Carry out PSC inspection on the ship's specific areas
- Part C. Detailed outline

- Part D. Instructor manual
- Part E. Evaluation and assessment
- Appendix I. Guidance on the implementation of IMO model courses
- Appendix II. Instructor feedback on model course
- Appendix III. Instruction for writing case studies

3. HSSC의 최신 검사지침 및 III Code 관련 규정의 의무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목록 (의제 9, 10)

HSSC(Harmonized system of survey and certification)에 따른 검사지침은 새로운 규제 요건을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업데이트되고 있음. 현재 Res.A.1186(33)에는 2023 년 12 월 31 일까지 발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HSSC에 따른 검사지침의 텍스트에 포함된 각주 논의)

HSSC에 따른 검사지침의 텍스트에 포함된 각주 분석결과를 검토했으며, 협약본문에 각주가 있음에도 검사지침에 중복해서 추가된 각주를 식별하여 삭제함.

(HSSC에 따른 검사지침과 의무규정 사이의 간극 분석)

증서 및 기록의 검토와 관련된 검사항목을 논의하면서 IP Code 증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항목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 검사항목을 삭제하는 것을 제안함. 다른 증서들도 차기 회기간 작업반에서 삭제할 항목을 검토 예정임.

(HSSC 검사지침의 개정)

SOLAS II-1/3-8규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검사항목에서 총톤수 3,000톤 이상의 선박의 경우, 기구에 의해 개발된 지침을 바탕으로 계류장치가 설계되고, 계류색을 포함한 계류 장비가 선택되어야 한다는 협약 원문에 맞게 수정됨.

(의무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목록 개정)

III 10에서 시간 관계상 검토되지 못하여 실무 작업반을 재 개설하기로 하였으며. 의무사항 목록에 대한 개정의 추가 개발을 위해 남겨진 항목의 식별을 III 11로 연기함.

4. 원격검사, ISM Code 심사 및 ISPS Code 인증의 평가 및 적용을 위한 지침 (의제 11)

(지침의 제목)

실무 작업반이 제안한 지침의 제목을 고려하고, 관련 IMO 협약과 일치시키기 위해 "ISM 코드 인증(verification)" 대신 "ISM 코드 심사(audit)"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제목에 있는 각주는 설명을 위해 남겨두기로 함.

(PSC 검사 중 발생한 결함 시정과 관련된 추가 원격 검사/심사/인증을 위한 적격 항목 수락)

III 10은 PSC 검사 중에 발생한 결함 시정과 관련하여 추가 원격 검사/심사/인증을 위한 적격 항목의 수락을 제안하며, 기국과 항만국이 공동으로 고려해야함. 그러나 지침 초안이 항만국통제(PSC)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작업반은 PSC 관련 사항을 삭제하기로 하였으며, 추후 실무 작업반에서 새로운 텍스트를 개발할 것을 권고함.

(특정 기술 요건)

III 10 원격으로 수행되는 모든 검사/심사/인증에 대해 대면 참석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기술 요건을 개발할 필요성을 고려하였으며, 주관청 및 위임기관(RO)에 대한 절차 수립과 같은 요건이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침 초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실무작업반에서 기술 요건에 관한 섹션을 검토할 것을 권고함.

(ISM 코드에 따라 임시 안전 관리 증서(SMC) 및 적합확인서(DOC)를 발급하기 위해 수행되는 원격 인증 범위)

III 10은 ISM 코드에 따라 임시 SMC 및 DoC를 발행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원격 검사의 범위를 고려함.

임시 ISM SMC 심사는 항상 대면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임시 DOC 심사를 위해 기존 DOC에 새로운 선박 유형이 추가되는 경우 원격 심사 사용을 고려할 수 있음.

(원격 ISPS 코드 인증)

원격 ISPS 코드 인증의 응용 프로그램과 범위를 고려함. ISPS 인증에서 다루는 정보의 매우 민감성을 고려하여, 지침 초안이 대면 참석 대신 원격 검증의 사용을 특별한 상황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으며, 시간 관계상 검토되지 못하여, 지침 초안에 명시된 대로 ISPS 검증 중에 검사해야 할 요소와 원격 검증에 대한 적격성을 검토할 수 없었으며, 추후 실무 작업반에서 III 10의 결과를 고려하여 이러한 요소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것을 권고함.

5. (의제 14) 해사주관청의 2012 케이프타운협정(이하 ‘C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지침 개발

CTA의 현존선 적용 및 어선의 검사 등과 관련되어 본 회의 및 회기 중 작업반에서 논의되었음. 작업반에서 작성된 결의서 초안은 MSC 109에 검토 및 채택을 위하여 제출함에 회원국들은 동의함.

(현존선의 CTA 적용)

현존선의 CTA 적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 사항에 대하여 “현존선들이 협정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회원국들은 적절한 조치를 수립하여야 함”이라는 문장을 추가하기로 하였으며, CTA의 1장 중 1규칙부터 5규칙까지의 내용만이 현존선에 적용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현존선의 CTA 적용에 대한 논의를 마쳤음.

작업반은 회원국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CTA의 2장부터 10장까지의 기술적 요건 중 현존선에 적용되는 사항들과 ‘점진적 이행’에 대한 사항들을 하기와 같이 표로 정리하여 추가함.

¹ CTA 1장 1규칙의 4항 및 5항 참조.

Chapters	Regulations in CTA	Requirements		Progressive implementation	
		Length (L) ≥ 24 m (300 GT) but < 45 m (950 GT)	Length (L) ≥ 45 m (950 GT)	Length (L) ≥ 24 m (300 GT) but < 45 m (950 GT)	Length (L) ≥ 45 m (950 GT)
Construction, watertight integrity and equipment (Chapter II)	None	✗	✗	✗	✗
Stability and associated seaworthiness (Chapter III)	None	✗	✗	✗	✗
Machinery and electrical installations and periodically unattended machinery spaces (Chapter IV)	None	✗	✗	✗	✗
Fire protection, fire detection, fire extinction and fire fighting (Chapter V)	None	✗	✗	✗	✗
Protection of the crew (Chapter VI)	None	✗	✗	✗	✗
Life-saving appliances and arrangements (Chapter VII)	VII/13 and 14	✗	✓	✗	✓ No more than 5 years
Emergency procedures, musters and drills (Chapter VIII)	VIII/1-4	✓	✓	✓ No more than 5 years	✓ No more than 5 years
Radiocommunications (Chapter IX)	IX/1-16	✗	✓	✗	✓ No more than 10 years
Shipborne navigational equipment and arrangements (Chapter X)	X/1-5 (However, some requirements apply only to vessels ≥ 35 m; vessels ≥ 45 m (950 GT); or vessels ≥ 75 m (3000 GT criterion))	✓	✓	✓ No more than 5 years	✓ No more than 5 years
	X/6(1)(a) and (b) where practicable (length and GT criteria)	✗	✓	✗	✓ No more than 5 years

<2012 케이프타운협정의 현존선에 대한 기술 요건 관련 개요>

(CTA와 국내 법령이 상이할 경우의 CTA 적용)

아일랜드 등 EU 국가들의 경우, CTA의 요건보다 높은 수준의 국내 법령을 이미 어선들에 적용하고 있음을 예로 들며, CTA 비준국의 국내 법령과 CTA의 요건들이 상이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문장을 추가하기로 결정함.

(어선의 원격검사 사항 삭제)

화물선과 여객선에서 시행되는 위험성 평가 및 ISM 이 어선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어선에 원격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격검사 관련 사항들을 삭제함에 회원국들은 동의함.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사업무팀장

담당자: 임도민 수석검사원

Tel: +82 70 8799 8208

Fax: +82 70 8799 8219

E-mail: psc@krs.co.kr

Disclaimer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